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18 - 35 - 38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7. 1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참고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참고 2〉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경찰청이 ‘ ’ 해커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옴('18.1.2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2018.2.27.~2018.2.28.)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 여행상품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18. 2. 27. 기준으로 79,885건의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 5〉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워크 회원	아이디,성명,영문이름,생년월일,성별,이메일,휴대전화 번호,주소,결혼여부 등	55,351건*

* 경찰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산출함

(2) 유출 경로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거가 홈페이지( )를 SQL인젝션 방법으로 공격[1]하여 회원정보 55,351건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유출 신고

피심인은 2017.7.12. 숙박앱 ' '를 해킹한 해커 일당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던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심인은 231일이 경과한 2018.2.27.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신고하였고, '17년 1월말 신규 서버를 구축하면서 기존 결제내역(입금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2018. 2. 27.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을 지연 신고한 행위

1)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값(SQL구문)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자료 이외에 해커가 원하는 자료까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출 가능한 공격기법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중 DB에 접속한 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아니하고, 접속시간·성명·접속 IP 주소 등 관리자페이지 접속기록은 최근 2개월만 보존·관리하고, 사용자 행동로그(업무수행내용)는 최근 3개월만 보존·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DB 및 관리자페이지의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 사실이 없다.

〈참고 7〉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기록 - 최근 2개월까지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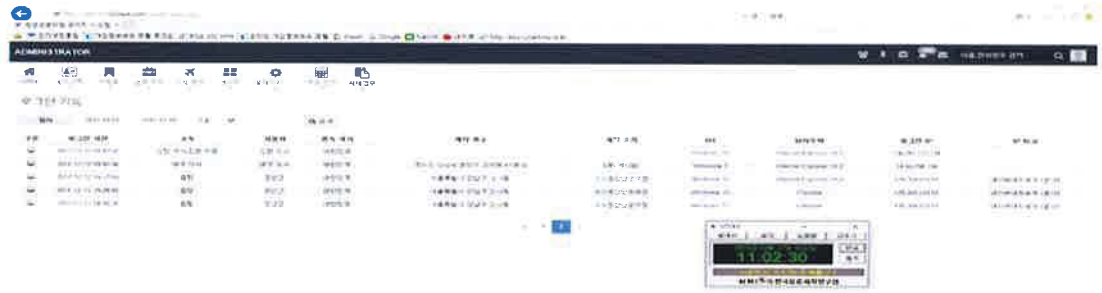

〈참고 8〉 관리자페이지 업무수행내용 - 최근 3개월까지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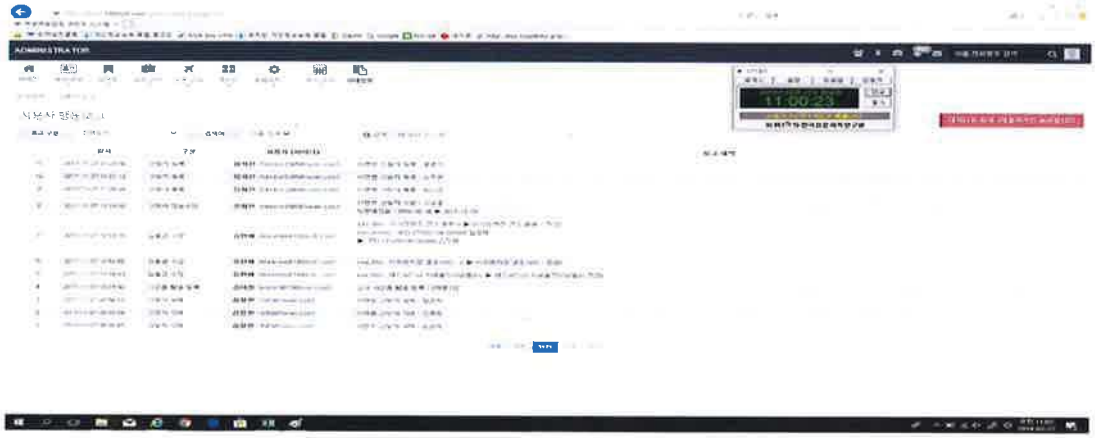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 고시 제4조제5항의 입법 목적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인 바, 그 내용은 첫째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 의무이고, 둘째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운영' 의무이다.

먼저 시스템 '설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①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침입차단기능)과 함께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침입탐지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2018. 2. 27.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고시 제5조제1항의 입법 목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것

3)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참고 11〉 과태료 산출내역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7의3①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28①2·3호	1,000만원	500만원	없음	**1,500만원**
계				**2,5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과태료)제1항제2호의3·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허 욱 (인)

위 원 김 석 진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